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단 소속 근로자의 비상임이사 자격 부여〉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78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단 소속 근로자의 비상임이사 자격 부여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23일 이용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공단 소속 근로자에 비상임이사 자격 부여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자격요건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③ (생략)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 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 명한다. <후단 신설>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 ⑥ (생 략)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¹⁾

- 1)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서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²⁾

개정안은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의무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현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도 규정함으로써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의 취지를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같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2)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 제3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이사회 구성원 대표성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임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